

‘26. 7.

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
(성덕 온마루센터) 민간위탁 동의(안)

농 촌 활 력 과

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(성덕 온마루센터) 민간위탁 동의(안)

의안 번호	2026-70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.
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추진배경

-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주요 시설물(성덕 온마루센터, 365체육센터)이 '26. 5월 준공됨에 따라,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회복·증진하고 나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성덕면 지역 법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고자 하는 바,
- 「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에 의거 성덕 온마루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

《 (참고)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개요 》

- ❖ 사업기간 : 2022 ~ 2026년(5년)
- ❖ 위 치 : 성덕면 석동리 384 일원, 성덕면 석동리 408-1
- ❖ 사 업 비 : 4,000백만원(국비 2,800, 도비 360, 시비 840)
- ❖ 주요내용 : 성덕 온마루센터, 365 체육센터 조성 및 지역역량강화 등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

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
- 「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6조·제16조
- 「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

나. 위탁시설 현황

시 설 명	성덕 온마루센터	365 체육센터
소 재 지	성덕면 석동리 384 일원	성덕면 석동리 408-1
시설규모	· 연면적 491.29㎡ (지상1층) · 운동실, 문화활동실, 공유주방 등	· 부지면적 4,118㎡ · 산책로, 주차장, 운동시설, 야외무대 등
위탁사무	· '성덕 온마루센터'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· 그 밖의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	

다. 위탁기간 : 2026. 9. ~ 2031. 9.(5년)

라. 소요예산 : 비예산

- 시설이용료,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경비 충당
- 단, 보수비, 수리수선비, 공공요금 등의 관리유지비 등은 시 예산 지원

마. 수탁자 선정방식

- 위탁방법 : 수의계약
- 위탁자격
 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(운영)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
 -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, 영농조합법인,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주민자치위원회
- 선정방법
 - 「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16조에 따른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관리수탁자 선정
 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→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
3. 추진상황

- 농촌협약 선정 ----- '21. 6.
- 농어촌공사 위(수)탁 계약 ----- '21. 11.
- 공사 착공 ----- '25. 1.
- 공사 준공 ----- '26. 5.

4. 금후계획

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협의회 개최 ----- '26. 7.
- 시설물 위·수탁 협약 체결 ----- '26. 9.
- 시설물 운영(위탁업무 수행) ----- '26. 9.

5. 따로붙임

- 민간위탁 동의(안)
-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획도
- 관련법령 발췌서
- 방침결정문

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(성덕 온마루센터) 민간위탁 동의(안)

김제시는 성덕 온마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성덕면에 위치한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, 김제시의회는 「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.

1. 민간위탁 실시

- ▶ 사 유 : 성덕 온마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· 관리 등

2. 민간위탁 대상

시 설 명	성덕 온마루센터	365 체육쉼터
소 재 지	성덕면 석동리 384 일원	성덕면 석동리 408-1
시설규모	· 연면적 491.29m² (지상1층) · 운동실, 문화활동실, 공유주방 등	· 부지면적 4,118m² · 산책로, 주차장, 운동시설, 야외무대 등
위탁사무	· '성덕 온마루센터'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· 그 밖의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	

3. 민간위탁 추진계획

○ 위탁근거

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(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·시행)
- 「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6조(관리위탁) 및 제16조(협의회 설치 및 구성)

○ 위탁기간 : 5년(2026. 9. ~ 2031. 9.)

○ 위탁자격 :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심의·의결



사업 위치도



성덕 온마루센터



365 체육쉼터

□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
(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·시행)

제38조(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(圈域)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.

1. 주거환경의 개선

2. 생활기반시설의 확충

3.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

4. 농어촌의 경관 보전

5. 농어촌관광의 진흥,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

6.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,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「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6조(관리위탁)

제6조(관리위탁) ①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**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.**

1.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(운영)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

2. **시설물이 위치한 읍·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, 영농조합법인,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주민자치위원회**

②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·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

2. 위탁 기간

3. 위탁료

4. 수탁자의 준수사항

5. 의무이행 위·수탁 협약 내용 위반시 조치사항

6.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재산기관 시설물 중 위탁업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부서에서 위탁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
□ 「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16조(협의회 설치 및 구성)

- 제16조(협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업무 담당 주관부서의 장, 시설물 소재지 읍·면장으로 한다.
-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, 연령별,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 단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일부개정 2024.5.8.>
1. 대학교수 등 농촌지역개발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일부개정 2024.5.8.>
 2. 시설물 소재지 마을대표 또는 단체 대표 등<일부개정 2024.5.8.>
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제21조제1항의 회의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.<신설 2024.5.8.>
- ⑦ 협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,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<제6항에서 이동 2024.5.8.>

□ 「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- ③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**자치사무는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**
-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다.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

문서번호	농촌활력과-4494	주무관	팀 장	과 장	소 장	부시장	시 장
보존기간	5년						
결재일자	2026. 6. 19.	김동국	이성민	박부미	이승종	이형석	김성주
공개여부		협 조					

-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(성덕 온마루센터) -

『김제시 일반농산물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』 추진계획



김 제 시
농 촌 활 력 과